

1997

모금과 구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DISASTER RELIEF



본협의회 회관 전경

인 사 말 씀



우리는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7.26 ~ 28기간동안 경기 북부 및 강원 영서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1백여명의 인명피해와 5천5백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당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번 천재지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을 돕고저 각언론기관을 통해 재해이재민 돕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4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성금과 의류및 생활필수품등 100만여점(11톤 트럭 133대분)이 접수되어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 복구 및 생계비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이재민들은 온국민의 따뜻한 동포애에 힘을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도 예견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5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 장 최 종 규

본 협의회 역대회장



창립 및 6대회장
柳 達 永
서울대학교 名譽教授



3대회장
李 寬 求
韓國新聞
放送編輯人協會 初代會長



5대회장
高 在 旭
(前)東亞日報社 會長



7대회장
柳 建 浩
(前)朝鮮日報社
主筆 및 代表理事



초대회장
俞 鎮 午
(前)高麗대학교 總長



4대회장
林 炳 稷
初代 外務部長官



8대회장
崔 鐘 律
(前)京鄉新聞社 社長 및 韓國新聞協會 會長

96년도 수재의연금 모금 및 사용공고

국민여러분!

지난 여름 경기북부 및 강원영서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크고작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재해로인하여 실의에 빠져 고통을 겪고있는 이재민을 돕기위해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그동안 국민여러분께서 성원 해주신 모집된 금액과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수재의연금품 모집내역

가. 수재의연금 모금총액	39,476 백만원
방송사 접수분	20,516백만원
신문사 접수분	16,811백만원
본회 접수분	2,149백만원
나. 수재의연물품 각종 생활필수품 100만점(환가액 90억원 상당)	

2. 수재의연금품 사용내역

가. 의연금 지원 총액	31,781 백만원
사망·실종자 위로금	617백만원
장기구호비	870백만원
침수주택수리비	14,234백만원
주택복구비	6,251백만원
무상양곡	1,748백만원
생계보조비외	503백만원
추석절위로금	7,558백만원
(집행후 차액 77억원은 차후 발생하는 크고작은 재해에 사용할 예정임)	

나. 수재의연금품

의류 및 각종 생활필수품 100만점은 수해지구 해당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여 이재민에게 배분되었다.

1997년 5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최종률

設立趣旨 및 沿革

1. 趣 旨

毎年 뜻하지 않게 發生되는 각종 災難으로 인하여 많은 동포들이 人命과 財産의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도 이러한 災難에 대하여 그 豫防과 事後對策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制限된 財政으로 소기의 성과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동족이 겪는 災難을 政府의 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포끼리 서로 돕고 동포애 발양으로 불의의 災難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있는 罹災民에 대한 復舊의 발판이 되어주고저 災害對策을 위한 常設機關으로 本協議會을 設置하고 災害募金을 一元化하여 迅速하고 效率的인 災害救護事業을 展開코저 합니다.

2. 目 的

不時로 發生하는 災害의 復舊와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國民義捐金品の 募集과 관리 및 配分을 통하여 隣保相助의 동포애를 바탕으로 福祉社會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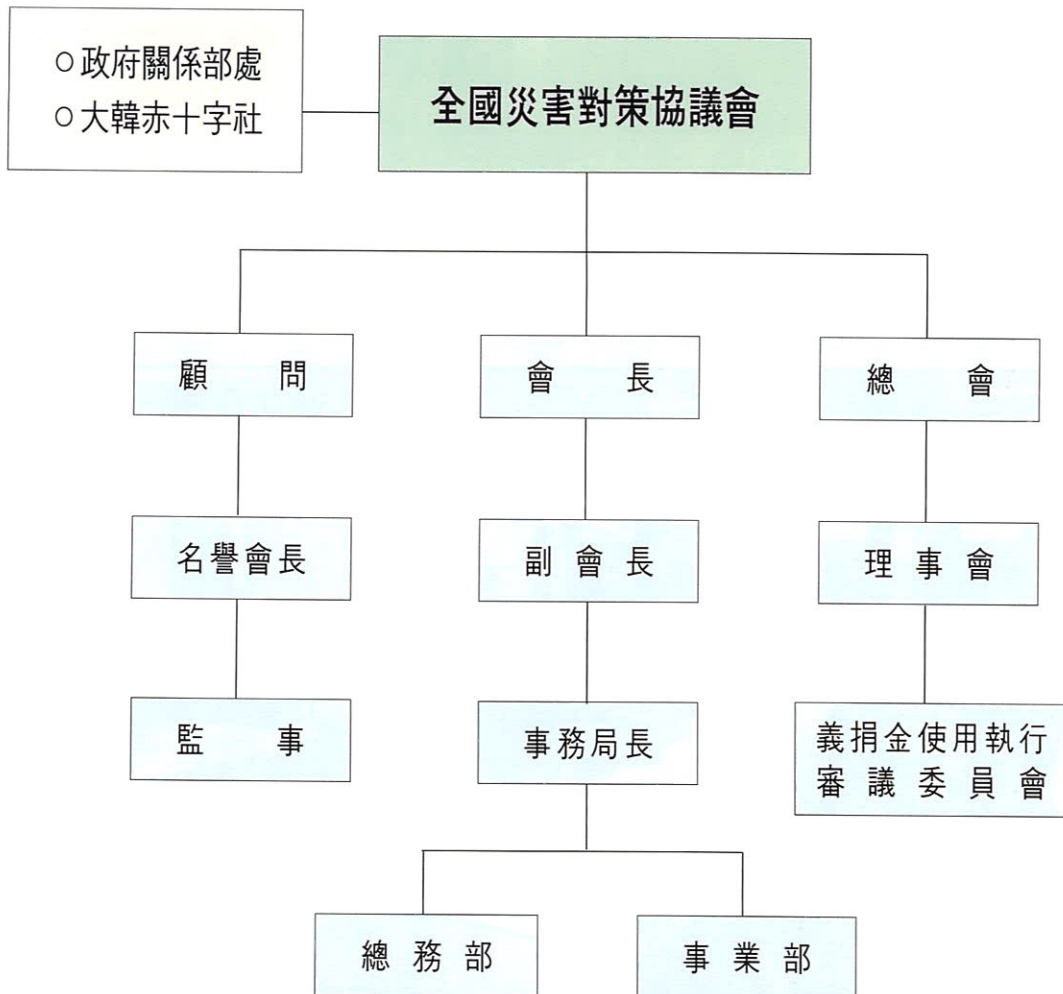
3. 沿 革

- (1) 1961년 7월 13일 全國水害對策委員會 組織
- (2) 1961년 10월 26일 全國災害對策委員會 創立總會
- (3) 1964년 9월 3일 保健社會部에 社會團體 登錄
- (4) 1964년 10월 31일 全國災害對策協議會로 改稱
- (5) 1968년 10월 15일 社團法人으로 改編

4. 事業

- (1) 災害復舊 및 救護를 위한 國民義捐金品 募集事業
- (2) 前號事業에 대한 企劃, 統制, 調查研究 및 弘報事業
- (3) 災害罹災民 救護事業
- (4) 其他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

5. 機構表





'97년도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사업등 사업계획안을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총회 및 이사회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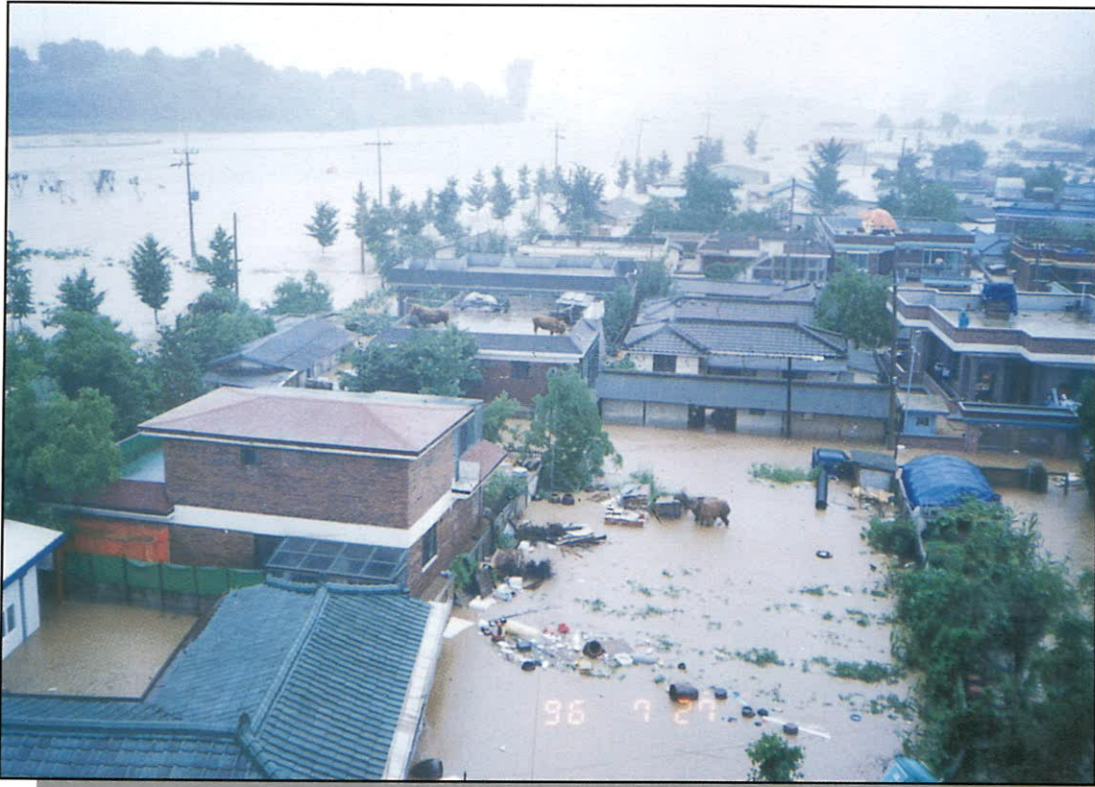
본협의회 창고에 모포, 버너 및 각종 생활필수품을 비축보관하여 재해발생 시 긴급히 이재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96. 7. 26 ~ 28일 경기북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탄강이 범람하고 공공시설등이 물에 잠겼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이 범람하여 농경지와 시가지의 주택이 침수되는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96. 7월 강원영서지방에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철원 텃골천이 범람하여 다리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96. 7월 강원영서지방에 많은 비가내려 가옥이 파손되는등 큰 피해가 발생되어 이재민들이 집단수용소로 이주하였다.





'96. 7월 강원 하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리시설이 파괴되는등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돕기 위하여 온국민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모아진 생활필수품을 해당 재해지역에 긴급히 지원하였다.





수재이재민을 돕기위하여 전국민들이 방송사로 기탁한 수재의연금을 홍두 표회장등 한국방송협회 회장단이 본회 회장단에게 전달하였다.



'96. 7월 경기 및 강원영서지방에 내린 호우로 이재민돕기 범국민적인 모금 운동에 참가한 기업에서 직접 본회를 방문 최종률회장에 성금을 기탁하였다.



지난 7 ~ 8월 재해로
인하여 범국민적 모금
사업을 전개하여 수해
복구와 생활안정에 도
움을 준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수여받은 본
회 최종률 회장



지난 7월 피해당시와 이후 국민성금이 포함되어 건립된 수해복구주택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 2리



태풍 재해 예방

1. 재해의 요인

호우 또는 태풍같은 일차적인 자연의 힘이 어떤 강도로 작용했을 때 어떤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차적 자연의 힘의 강도와 피해규모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토지에 고정된 구조물과는 달리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인간의 피해에 있어서는 인위적, 사회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만약 동일한 자연의 힘이 작용했을 경우라는 조건여하에 따라서 인적 피해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즉, 그것은 재해에 대비하는 사전준비, 긴급시의 피난행동 및 피해확대의 저지활동 등이 인적피해의 경감에 기여하게 되며 이들 방재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를 위한 행동은 지역사회의 특성, 지리적특성, 재해경험, 지해발생시각(주간 혹은 야간), 재해의 유형과 방재정보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2. 육상 예방대책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육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1) 일반사항

- (1) 태풍은 급격히 발달하거나 진행방향이 갑자기 변할 때가 많으므로 최신기상정보에 유의하여 태풍의 강도와 진행방향, 강풍지역과 호우지역을 잘 알아둔다.
- (2) 고립되거나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태풍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침착하게 준비한다.
- (3) 해안가나 도서지방의 저지대에 사는 사람, 가건물에 사는 사람, 강가 혹은 상습침수지역에 사는 사람은 미리 대피한다.
- (4) 농작물에 대한 항구적 대책으로서 방풍림, 방풍울타리, 방풍망을 설치하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보강을 위하여 콘크리트, 블럭벽의 기초나 접합부위를 견고히 하는 한편, 문이나 셔터의 유리창은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5) 가급적 외출 및 여행을 삼가한다.

2) 태풍 통과전

- (1) 태풍권에서는 정전과 단수사태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병원과 같은 중요시설에서는 보조전원장치를 점검하고 일반가정에서는 라디오, 랜턴, 배터리등을 준비하고 각종 용기에 물을 저장해 둔다.

- (2)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 밖을 합판등으로 막고, 만일의 사태시 유리창 등에 의하여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응급치료약을 준비한다.
- (3) 건축공사장에서는 철사, 밧줄등을 사용하여 날아가기 쉬운 물건들을 묶어두고, 가정에서는 집밖에 있는 쓰레기, 깡통, 각종 연장, 장난감등을 치운다.
- (4) 자동차에 충분히 연료를 채워두고 만일의 대피시에 옮길 물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족 가운데 각자의 행동과 책임을 정해둔다.
- (5) 모래주머니, 합판, 플라스틱판, 목재등 만일의 피해시 응급복구를 위한 준비를 해 둔다.
- (6) 정전이 될 때를 대비하여 냉장하지 않아도 보존이 가능한 식품을 준비하고 간이 취사도구를 점검한다.
- (7) 평상시 지형이나 지질을 잘 조사하여 산사태나 하천범람의 위험이 없는지를 알아 둔다. 예를들어, 논을 파 보았을때 큰돌이 출토되는 곳은 과거 산사태나 하천범람이 있었던 지역인 곳이 많다.
- (8) 하수도를 정비하고 축대나 담장들을 점검한다.
- (9) 해안지대에서는 선박을 단단히 묶거나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킨다. 특히 배를 정박시킨 다음 하선한 후에는 폭풍시에 배를 돌보기 위하여 다시 배에 승선하지 않는다.
- (10) 만일의 사태시 연락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청과 병원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 둔다.

3) 태풍 통과시

- (1) 집이 튼튼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집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피난처로 옮기고 태풍이 지나갈 때를 기다린다. 특히 가건물에 있을 때는 가건물을 빨리 떠난다.
- (2) 계속해서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시청하여 태풍의 위치를 확인하고, 한때 바람이 잔잔하더라도 태풍의 눈이 통과하는 30분~1시간 후에는 풍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다시 강해지므로 주의해야한다.
- (3) 일강수량이 100mm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변을 면밀히 점검한다. 오랫동안 계속된 비가 태풍중심권 이전부터 지속된 상태에서는 이보다 적은 강수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 도시지역에는 강수량이 20mm를 초과하면 홍수나 침수가 발생하기 쉽다.
- (5) 호우시 산간계곡 부근에서는 토사의 유실을 경계하며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대피한다. 산중턱의 골짜기 물이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때는 토사의 유

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심한다.

- (6) 집에서 대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있는 대로 생활 필수품들을 옮기고, 옮기지 못한 것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며 기계류 등은 윤활유를 칠해 둔다.
- (7) 물이 무릎이상 빠지는 냇물을 가로질러 건너지 말아야 하며 물이 불어나 넘쳐흐르는 도로로 차를 몰지 않는다.
- (8)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을 때는 산사태의 징조이므로 마을 뒤에 산이 있는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면을 잘 감시하고, 징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위험 할 때는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 (가) 경사면중 특히 중앙부나 끝부분에 다량의 물이 샘솟을 때
 - (나) 극단적으로 탁수가 흐를 때
 - (다) 평소에 나던 샘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나지 않을 때
 - (라)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날 때
 - (마) 경사면의 일부가 변화하거나, 혹은 금이 갔을 때
 - (바) 경사면의 일부가 붕괴될 때

과거 인명의 희생이 많았던 경사각은 평균 30° 이상이었으며, 40°~49°의 경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였고, 석축이나 절벽의 경우는 그 높이가 5m이상에서 거의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사각이 3° 이상으로서 5m이상의 석축이 있거나 경사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4) 태풍 통과후

- (1) 침수되었던 음식물은 먹지 말 것이며, 물은 마시기 전에 반드시 위해여부를 검사하고 특히 지하수는 주의한다.
- (2) 관계기관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재해지역의 접근을 금한다. 복구 및 구조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습기찬 지역에서 전기기구를 취급하지 않는다. 전기기구는 사용 전에 반드시 말리고 점검한 후에 사용한다.
- (4) 도로의 지반침식, 붕괴 등을 생각하여 자동차 운전을 삼간다.
- (5) 늘어지거나 매달려 있는 전선을 피하고 이를 가까운 관서에 신고한다.
- (6) 부서진 하수도나 상수도는 당국에 신고한다.
- (7) 장시간 정전이 되었을 때는 냉장고에 저장된 음식물이 상했는지 검사한다.
- (8) 수압이 낮아져서 소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특히 화재에 유의한다.

주요 태풍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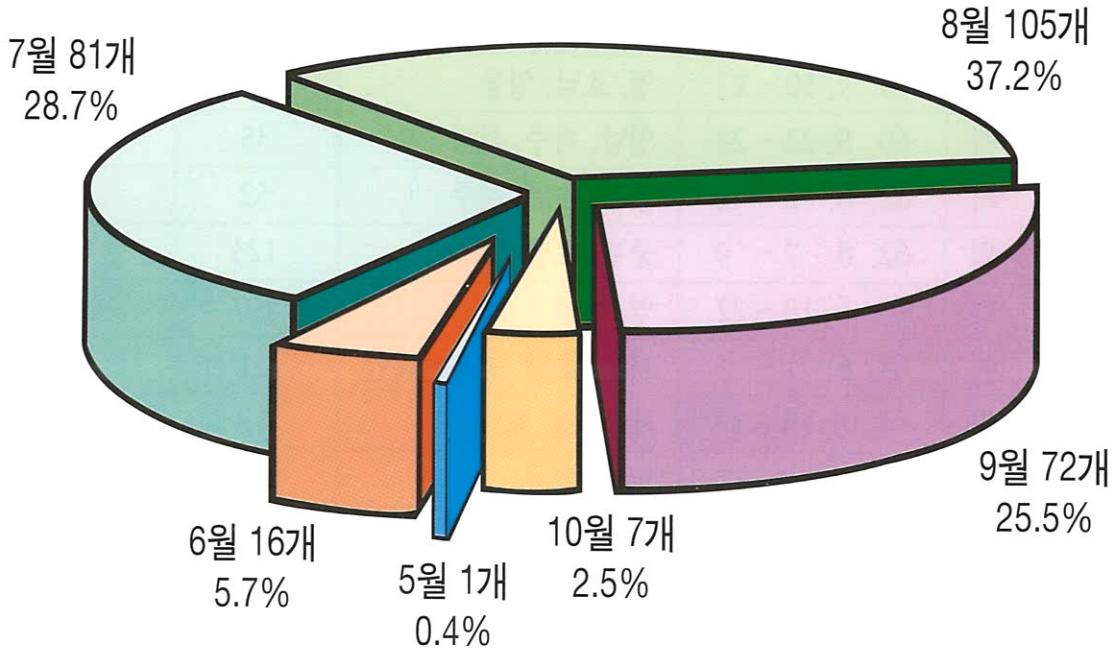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태풍이름	내습년월일	피해지역	사망·실종	재산피해
사라	59. 9. 10 ~ 17	영, 호남, 영동	849	204,335
카멘	60. 8. 22 ~ 24	영남, 제주, 서해중부	35	13,661
노러	62. 8. 2 ~ 4	중부, 호남, 제주	52	2,587
오펠	62. 8. 7 ~ 9	중부, 호남	123	1,485
설리	63. 6. 18 ~ 22	영, 호남	107	42,588
헬렌	64. 8. 1 ~ 3	제주, 호남, 중부서해안	41	2,842
폴리	68. 8. 15 ~ 17	제주, 영, 호남	73	36,195
올가	70. 7. 3 ~ 7	남부, 영동	84	68,353
빌리	70. 8. 30 ~ 31	제주, 호남, 서해지방	38	58,284
리타	72. 7. 25 ~ 26	영, 호남, 제주	54	10,521
베터	72. 8. 18 ~ 20	남부, 남해안	550	184,637
폴리	78. 6. 19 ~ 20	영남	25	6,652
카멘	78. 8. 13 ~ 20	제주남쪽	33	46,085
어빙	79. 8. 16 ~ 17	제주, 경북, 호남	17	77,042
쥬디	79. 8. 25 ~ 26	제주, 서해, 동해안	136	116,193
애그니스	81. 9. 1 ~ 4	남해, 동해안	139	131,395
세실	82. 8. 13 ~ 14	서해안지방	70	55,012
준	84. 9. 2 ~ 3	전국	189	208,145
키트	85. 8. 9 ~ 11	제주, 전남, 경북	12	4,079
브렌다	85. 10. 5 ~ 7	제주, 영남, 동해안	69	35,199
베라	86. 8. 26 ~ 29	영, 호남 및 중부지방	42	206,724
셀마	87. 7. 15 ~ 16	영, 호남 및 중부지방	178	496,243
다이너	87. 8. 30 ~ 31	남부지방	73	140,267
쥬디	89. 7. 28 ~ 29	경남, 남해안지방	20	145,023
글래디스	91. 8. 22 ~ 24	영남지방	103	262,972
로빈	93. 8. 8 ~ 11	영, 호남, 강원	6	94,471
재니스	95. 8. 25 ~ 27	중부	65	456,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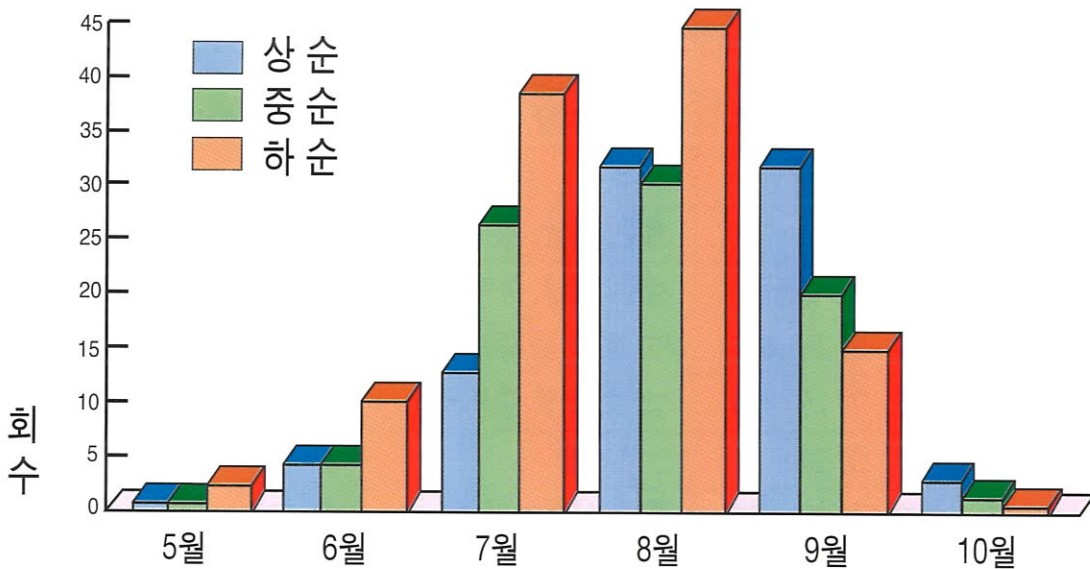
(피해액은 96년 가격기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분포도

(1904년 ~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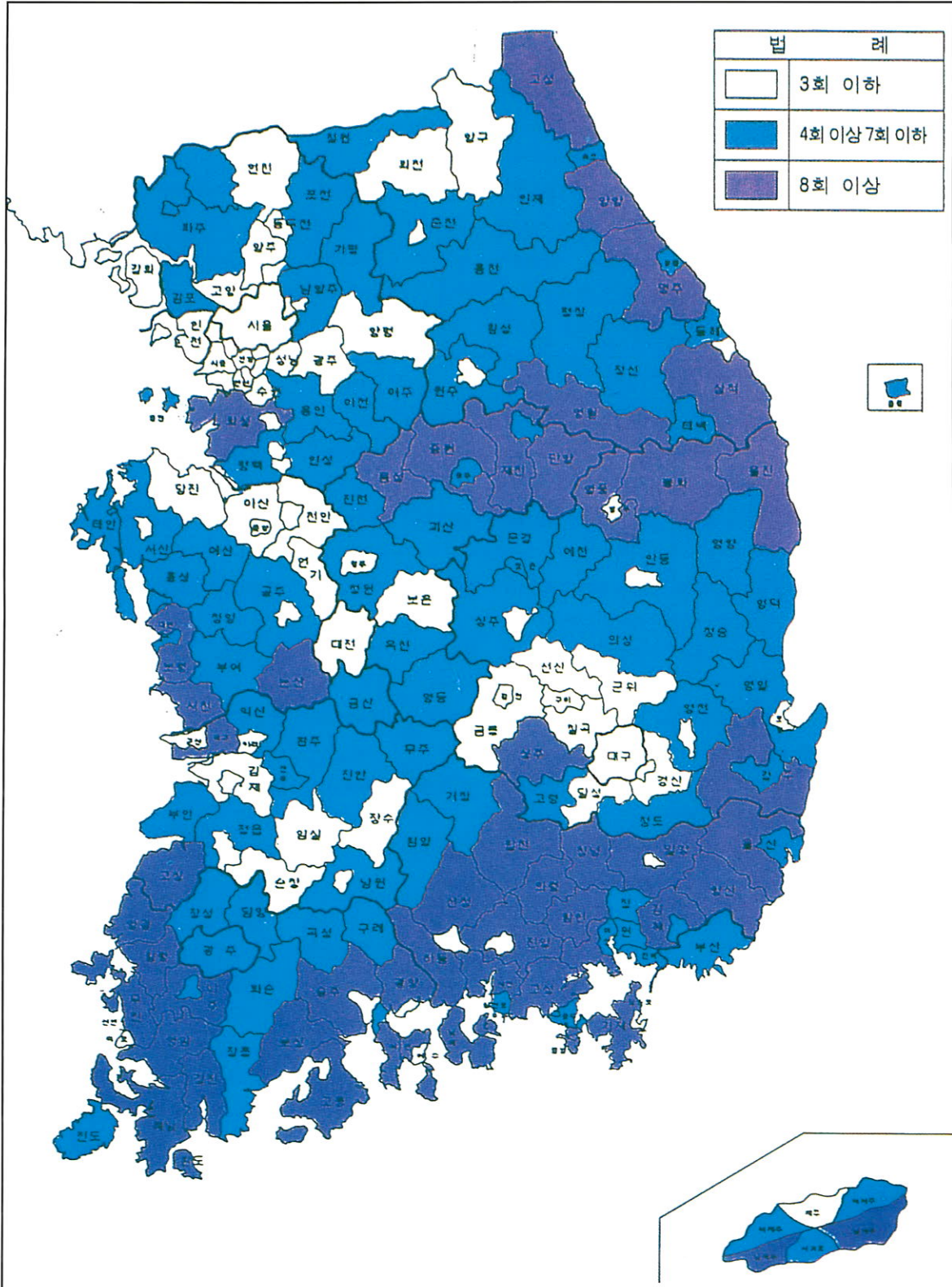
⊙ 태풍의 월별 분포 ⊙



⊙ 태풍의 순별 분포 ⊙

자료 : 기상청(태풍백서)

최근 10년간 시군별 우심피해 발생회수



자료 : 중앙재해대책본부

80년이후 재해피해 현황

종목 연도	사망 (인)	이재민 (정보)	침수면적 (정보)	건 물 (천원)	선 박 (천원)	농 경 지 (천원)	농 작 물 (천원)	공공시설 (천원)	기 타 (천원)	합 계 (천원)
1980	279	53,860	115,762	11,819,252	7,562,739	47,176,722	88,370,330	150,628,748	22,008,979	327,566,770
1981	216	18,306	149,583	4,441,385	2,943,794	14,831,171	22,446,759	109,366,793	12,953,499	166,983,401
1982	121	6,609	37,007	1,047,919	1,308,915	5,754,543	35,522,576	52,620,544	10,465,767	106,720,264
1983	91	1,348	25,061	2,699,403	1,323,628	118,446	12,965,494	5,555,303	2,648,922	25,311,196
1984	265	364,231	140,380	11,482,284	848,272	23,904,443	84,759,071	156,610,532	45,355,286	322,959,888
1985	250	72,257	126,178	1,539,002	6,808,811	2,029,588	91,625,268	56,637,397	17,262,965	175,903,031
1986	156	99,114	87,855	2,509,098	3,107,399	2,140,821	225,209,577	51,005,212	21,096,477	305,068,584
1987	1,022	272,277	299,466	17,871,509	25,109,046	88,257,870	293,458,820	702,348,061	249,715,202	1,376,760,508
1988	143	5,066	17,470	871,353	1,883,859	13,388,876	17,192,959	104,822,948	16,424,338	154,584,333
1989	307	92,599	120,369	7,386,075	6,627,894	18,265,901	286,804,128	255,041,913	112,034,280	686,160,191
1990	257	203,314	129,314	11,054,457	3,637,119	53,878,587	175,854,833	331,237,309	203,217,004	778,879,309
1991	240	29,573	61,258	5,666,941	2,508,056	43,930,875		340,708,099	50,218,450	443,032,421
1992	40	965	13,969	108,945	1,218,293	1,557,683		16,852,264	7,222,363	26,959,548
1993	69	13,779	58,483	1,293,919	11,720,933	11,113,467		169,365,749	24,130,287	217,624,355
1994	72	1,852	6,275	598,425		11,753,637		93,143,815	59,286,034	164,781,911
1995	158	30,408	79,252	5,090,616	7,142,672	62,605,655		445,663,536	96,393,226	616,895,705
1996	97	39,071	40,236	15,621,000	304,000	59,695,000		409,422,000	62,208,000	547,250,000
합 계	3,783	1,304,629	1,507,918	101,101,583	84,055,430	460,403,285	1,334,209,815	3,451,030,223	1,012,641,079	6,443,441,415
연평균	222	76,742	88,701	5,947,151	4,944,437	27,082,546	78,471,165	203,001,777	59,567,122	379,014,198

(96년 가격기준)

80년도 이후 인명피해 현황

(1980 ~ 1996)

년 도	합 계	사 망 · 실 종			부 상
		소 계	사 망	실 종	
1980	1,597	447	447	-	1,150
1981	442	350	350	-	92
1982	279	215	215	-	64
1983	242	153	153	-	89
1984	629	364	364	-	265
1985	380	332	332	-	48
1986	259	156	93	63	103
1987	1,648	1,022	586	436	626
1988	160	143	64	79	17
1989	383	307	207	100	76
1990	305	257	181	76	48
1991	422	240	170	70	182
1992	42	40	17	23	2
1993	116	69	40	29	47
1994	115	72	29	43	43
1995	189	158	158	-	31
1996	102	97	97	-	5
합 계	7,310	4,422	3,503	919	2,888
평 균	430	260	206	54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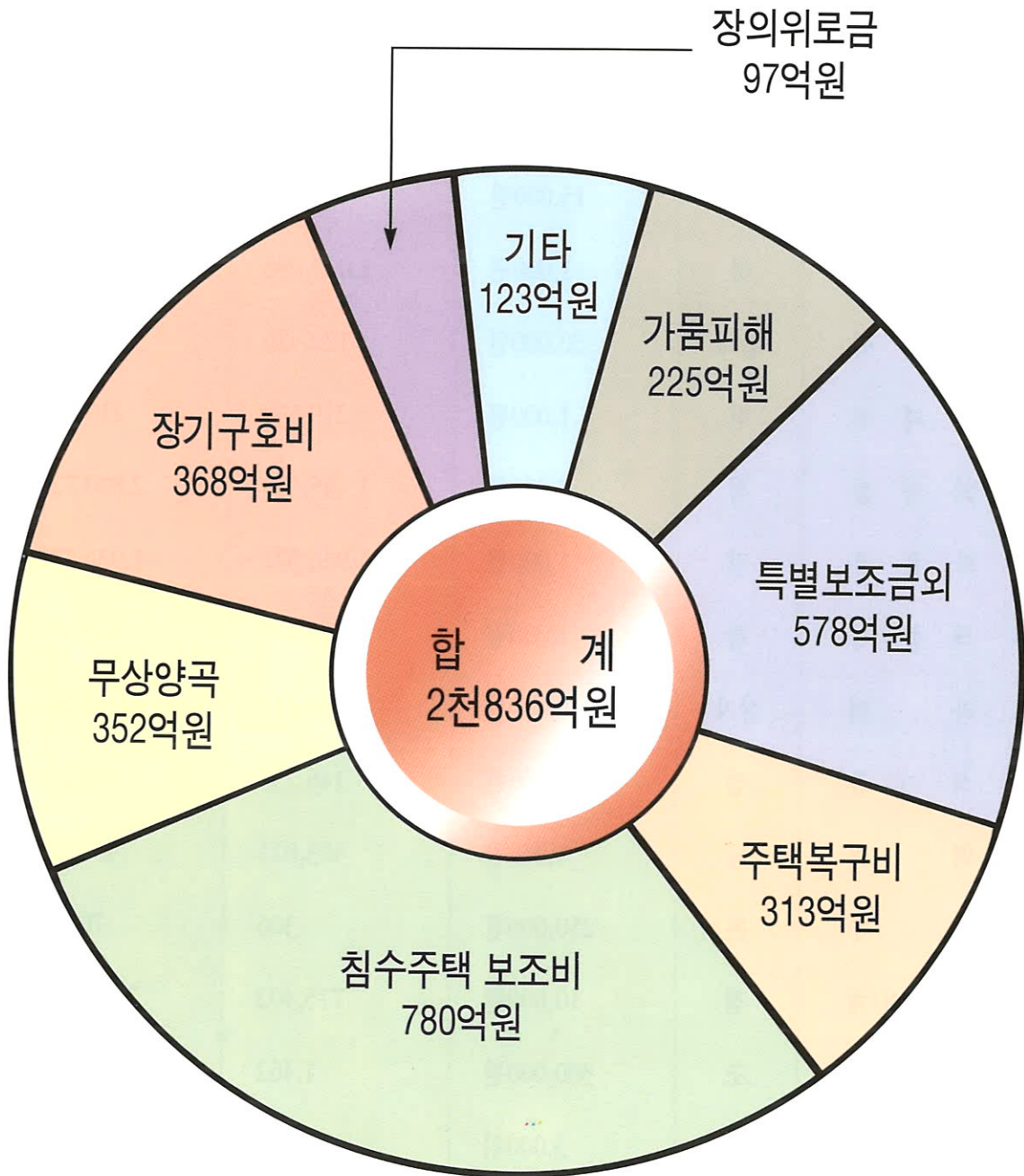
80년이후 재해모금 및 구호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모금및이자 수 입 액	구 호 비			
		주택복구비	긴급및장기 구호비 외	기 타	합 계
1980	10,434,348	3,286,385	4,250,756	274,898	7,812,039
1981	8,349,573	1,752,474	3,731,450	322,592	5,806,516
1982	1,665,839	423,804	2,159,557	328,714	2,912,075
1983	1,029,105	418,044	44,912		462,956
1984	22,273,491	1,245,048	21,136,088	40,061	22,421,197
1985	1,529,889	634,227	2,043,117	259,779	2,937,123
1986	456,605	829,661	2,863,303	262,218	3,955,182
1987	43,058,352	6,164,900	30,807,949	2,671,515	39,644,364
1988	2,311,360	608,210	2,221,783	129,983	2,959,976
1989	23,876,248	2,483,234	16,574,910	279,535	19,337,679
1990	54,624,285	2,577,621	36,999,799	976,831	40,554,251
1991	32,836,520	1,438,080	18,610,189	153,812	20,202,081
1992	4,896,756	51,994	2,850,494	224,113	3,126,601
1993	8,651,662	670,661	28,221,557	5,858,649	34,750,867
1994	27,506,914	324,417	25,270,370	295	25,595,082
1995	17,993,149	1,945,121	17,142,528	222,617	19,310,266
1996	40,701,072	6,476,050	25,028,908	276,329	31,781,287
평 균	302,195,168	31,329,931	239,957,670	12,281,941	283,569,542

(96년도 가격기준)

80년이후 도표로 본 재해구호 현황



(96년도 가격기준)

의연품 총접수 현황

(1961 ~ 1996)

품 명	단 위	단 가	총 수 량	환가액 (천원)
의 류	점	35,000원	6,953,969	243,388,915
침 구 류	매	30,000원	150,977	4,529,310
버 너	대	15,000원	18,429	276,435
생 필 품	점	1,000원	1,012,086	1,012,086
신 발 류	켈레	30,000원	122,426	3,672,780
세 제 류	점	1,000원	219,598	219,598
의 약 품	점	2,000원	1,445,363	2,890,726
학 용 품	점	1,000원	1,936,571	1,936,571
식 품 류	점	1,000원	863,497	863,497
라 면	상자	6,000원	69,115	414,690
식 기 류	점	3,000원	146,733	440,199
백 미	kg	1,200원	403,611	484,333
생 수	톤	250,000원	306	76,500
건축 자 재	점	10,000원	775,402	7,754,020
가 구 류	조	300,000원	1,462	438,600
벽 지	평	3,000원	24,308	72,924
기 타	점	5,000원	1,794,461	8,972,305
합 계			15,938,314	277,443,489

(96년도 소매물가 기준)

최근 5년간 재해의연금 모집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입	합 계	35,065,747	40,111,821	49,333,238	27,943,482	49,833,550
	전년도이월금	30,695,831	32,275,536	27,693,285	10,415,542	9,132,478
	모금수입	30	10,200	19,067,869	16,421,556	39,475,724
	이자수입	3,188,206	2,919,439	1,439,684	925,188	805,673
	집행잔액반환금	1,181,680	4,906,646	1,132,400	181,196	419,675
지출	합 계	2,790,211	12,418,536	38,917,696	18,811,004	31,781,287
	장의, 위로금	20,000	224,000	1,390,000	833,000	617,500
	응급구호비					367
	장기구호비	369,321	2,723,410	875,114	1,294,151	869,920
	생계보조비		5,500	1,250	40,750	330
	주택복구비	46,400	600,104	298,960	1,864,800	6,250,500
	세입주보조비		7,350	3,000	30,030	225,550
	침수주택수리	771,300	2,706,700	594,500	4,981,850	14,234,500
	추석절미귀가 세대위로금		198,800			7,558,520
	이재민특별위로금		86,500	12,000	2,074,100	
	무상양곡	1,383,190	559,672	18,789,597	7,475,462	1,747,771
	가뭄극복대책비			16,953,000		
	긴급생필품구입비	200,000			200,000	
	기 타		5,306,500	275	16,861	276,329
잔 액		32,275,536	27,693,285	10,415,542	9,132,478	18,052,263

'96년 재해의연금 모금현황

(단위 : 천원)

언론사	구분	모 금 액	공무원모금	학생모금	기업체모금	일반모금
한국방송공사		12,603,147	1,348,537	957,839	6,717,477	3,579,294
문화방송		5,846,025	461,836	339,069	2,554,713	2,490,407
서울방송		1,388,477	86,554	73,657	636,142	592,124
기타방송		678,081	96,886	84,190	283,976	213,029
경향신문		334,420	153,191	3,552	69,200	108,477
국민일보		887,905	9,849	200	125,805	752,051
동아일보		1,317,142	148,159	150,133	564,286	454,564
문화일보		51,124			23,500	27,624
조선일보		4,685,072	453,810	416,186	2,892,478	922,598
한국일보		1,502,286	115,379	107,761	622,175	656,971
중앙일보		357,082	7,427	32,090	100,383	217,182
서울신문		482,820	126,611	2,559	286,018	67,632
한겨레신문		45,739		262	13,591	31,886
세계일보		142,573	5,661	1,780	57,709	77,423
매일경제신문		241,089		229	163,067	77,793
내외경제신문		12,350			10,000	2,350
한국경제신문		284,084			187,080	97,004
지방신문사외		6,466,783	934,904	812,399	2,740,236	1,979,244
본회접수분		2,149,425	7,819	139,172	1,922,787	79,647
합 계		39,475,624 (100%)	3,956,623 (10%)	3,121,078 (8%)	19,970,623 (51%)	12,427,300 (31%)

'96 시 · 도별 재해의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시도	사망실종 부상자 위로금	응급 구호	장기 구호	생계 보조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복구비	세입주 보조비	무상 양곡	추석 위로금	재향 군인 회외	기타 (운송 비외)	계
서울	152,500				1,944,850	7,200			685,100			2,789,650
부산	10,000		5,617					39,006				54,623
인천	50,000		59		3,400	2,400			1,800			57,659
대구	10,000							23,232				33,232
광주		6				900						906
경기	170,000		477,061		8,711,000	3,762,600	198,000		4,838,360			18,157,021
강원	180,000	38	222,838		3,566,250	2,436,000	27,550		2,033,260			8,465,936
충북	10,000	51	89			9,000		7,722				26,862
충남		110	55,756			14,400		183,381				253,647
전북		13	11,025		6,750	5,400		63,225				86,413
전남	15,000	149	88,624	330	900	9,000		380,621				494,624
경북	10,000		2,407		1,350	3,600		921,125				938,482
경남	10,000		6,444					129,459				145,903
재향 군인 회외										216,895		216,895
기타 (운송 비외)											59,434	59,434
계	617,500	367	869,920	330	14,234,500	6,250,500	225,550	1,747,771	7,558,520	216,895	59,434	31,781,287

재해 구호 지침

(보건복지부)

원 칙

- 신속한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실시
- 재해지역의 철저한 방역 및 의료구호
- 비축물자의 적기공급 및 과학적인 보관관리

1. 개 요

가. 구호목적

-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 및 재해의 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

나. 구호대상

(1) 중앙지원 대상

- 재해구호법에 의한 기준
 -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 이상, 광역시는 30세대 이상, 시·군은 20세대 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 동일 지역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명 이상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의한 기준(동 규정 제3조)
 -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특별시의 구 : 20억원
 - 광역시의 구, 인구 30만이상시 : 11억원
 - 기타 시·군 : 7억원

(2)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지역의 구호기관의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97년도 이재민 구호기준”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
- 구호비용은 구호기관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구호계획 및 구호체계

(1) 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실

- 정에 맞는 재해구호계획을 수립(년초)
-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계획
-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리계획
- 재해지역 방역 및 의료구호 계획 등

(2) 재해구호기구 설치

- 중앙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재해구호활동반
-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계확립

2. 지원기준

(1)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

○ 위로금(장의비 포함)

-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시·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을 즉시 지급 하여야 함.
 -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 1,000만원
 -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원인 경우 : 500만원
 - 부상자는 사망·실종자 위로금의 50퍼센트 지급

〈위로금 지급시 유의사항〉

- 위로금은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급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친척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세대주는 성별, 연령,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 생계보조금

- 재해로 인하여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활상태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생계보조금을 지급함.
 - 1급 : 생계 유지가 극히 곤란하여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2급 :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자활보호세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세대당 400만원 지원
-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이재민 생계 구호

○ 응급생계구호

-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간의 응급생계구호를 실시함.
- 시, 도지사는 이재민의 응급생계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수용시설 확보(임시주거시설 설치 포함), 식량, 의류, 침구, 취사, 난방도구, 연료, 의약품등 기초 생활필수품의 제공
 - 대한적십자가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 구호관련 단체와 협조
- ※ 시, 도지사는 구호기준에 의한 구호 이외에 자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기초 생활필수품을 지원 가능
- 기초 생활필수품 지원시에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서 지원되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 장기생계구호

-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개월 내지 3개월(응급구호기간 포함)의 범위내에서 구호를 실시함.
 - 농경지 2ha미만 경작자로서 80%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와 소규모 농림시설, 소규모 축산물증식시설 및 가축, 소규모 어망, 어구, 소규모 수산물 증, 양식시설 및 수산 생물 등이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 3개월까지
 - 주택전파 : 2개월까지
 - 주택반파 : 1개월까지
 - 10톤미만 어선의 전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2개월까지
 - 10톤미만 어선의 반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1개월까지
- ※ 대규모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이내 구호실시 가능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세입자(전, 월세)는 대상자에 포함

(3) 재해복구지원

○ 세입주자 보조비

-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 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실계약금을 지원함.

○ 침수주택 수리비

-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리비를 지원함.
 - 완전 침수 : 세대당 75만원(방 출입문 윗부분까지 침수된 경우)
 - 일부 침수 : 세대당 45만원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 세입주가 피해대상자인 경우, 침수주택수리비는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되, 주택소유자가 이를 복구하였을 때에는 지급된 금액내에서 상호 정산토록 함.

'97년도 구호비 지원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제정)

구 분		종 별	단 위	지 원 액	재 원	
사 망 자 및 실 종 자	위 로 금	구	세대주	10,000천원	의연금 100%	
			세대원	5,000천원		
부 상 자	"		1인	2,500천원	의연금 100%	
응 급 생 계 구 호 비	최초7일간		인/일	2,008.60원	국고 70% 재해구호기금 15% 의 연 금 15%	
장 기 생 계 구 호 비	1~3 개월		1인/1일	1,857.45원	국고 70% 재해구호기금 15% 의 연 금 15%	
생계보조비	1급	세대		5,000천원	국고 70% 의 연 금 30%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경우 그 유가족	
	2급			4,000천원		
침 수 주 택 보 조 비	일부침수		"	450천원	의 연 금 100%	
	완전침수		"	750천원	의 연 금 100%	
주 택 복 구	전 과 주 택	15 평형	동	18,000천원	국고및지방비(20%)	3,600,000
					의 연 금(10%)	1,800,000
	장기저리융자(60%)	10,800,000				
자 부 담(10%)	1,800,000					
10 평형	"	"	12,000천원	국고및지방비(20%)	2,400,000	
				의 연 금(10%)	1,200,000	
장기저리융자(60%)	7,200,000					
자 부 담(10%)	1,200,000					
반 과 주 택	"	"	9,000천원	국고및지방비(20%)	1,800,000	
의 연 금(10%)	900,000					
장기저리융자(60%)	5,400,000					
자 부 담(10%)	900,000					
세 입 주 자 보 조 비	월 세 및 전 세 금	세대	3,000천원 범위내 실계약금	국 고 50% 의 연 금 50%		
아파트입주	13 평형	"	입주보증 및 6개월 임대료	국고및지방비 50% 의 연 금 50%		
무 상 양 곡 지 급	30~50% 미만피해	"	양곡 3가마	국고 70%	(1ha미만 경작 농가)	
	50~80% 미만피해	"	양곡 6가마	국고 또는 의연금 30%	(2ha미만 경작 농작물 피해 농가 및 이와 유사한 재산 소유의 어망, 수산 증·양식 시설등 피해 어가)	
	80%이상 피 해	"	양곡 10가마			

3. 재해구호물자 관리

가. 적용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전시재해구호물자 포함)
-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기탁된 재해구호물자

나. 비축물자 확보

- 시, 도지사는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5년간의 시,군,구별 재해발생현황, 물자자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량을 상시 확보하여야 함.
- 재해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등 비축 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하여 보관토록 함.
- ※ 변질 우려가 있거나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구매선을 사전 파악관리하고,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재해구호물자중 낡고 변질되어 사용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불용처분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처분하고, 현실에 맞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다.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 시,도지사는 최근 5개년동안 평균 구호실적을 파악하여 교통, 재해 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전용창고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전시구호물자는 별도 보관, 관리하지 말고 재해구호물자와 함께 보관, 사용하되 그 내역을 비치, 관리하고, 사용 즉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비축하여 비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비축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 위임 및 관리요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물자의 입,출고 및 보관물자의 망실, 훼손, 보관 상태 등의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라. 물자의 사용

- 시,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보관중인 물자로 우선 지원
- 시,도지사는 지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요청하거나 업체를 통해 구매전달
- 재해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창고의 보관물자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시,도의 물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급조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4.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 대규모의 재해 발생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연금품 모집을 주관함.
- 의연금품모집 중앙 일원화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접수된 의연금품이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허가받은 기부금품 모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즉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하여야 함.
- 대규모 재해발생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일일보고 하여야 함.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현황
- 의연금품 모금현황

(대한적십자사)

- 재해구호물자보유 및 지원현황
- 급식소 운영 및 자원봉사 현황

의연금 관리 · 운용 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6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의 모집 및 관리, 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3조(의연금운용 계획) ①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마다 연도개시 의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연금 운용계획에는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등 기타 의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연금 모집결과보고) 협의회장은 의연금 모집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모금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연금 사용) ① 의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재해이재민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2.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3. 모금경비 및 협의회 운영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초과유보의연금의 특별사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해지역 관할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규정에 의하여 의연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의연금 사용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확실히 예

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 회장과 협의하여 이재민의 구호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

1.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50만원 이내의 명절 특별위로금(설날, 추석, 성탄절 및 부처님오신날로서 재해 발생후 처음 맞게 되는 날에 한한다.)
2.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 이내의 연료비
3.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의 경우는 세대당 300만원이내, 반파의 경우는 세대당 150만원이내, 완전침수는 70만원이내, 일부 침수는 40만원 이내의 주거비 보조
4.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30만원 이내의 월동대책비
5.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유족에 대하여는 1인당 1,000만원 이내, 부상자(산업 재해보상보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이상)는 500만원 이내의 위로금)

제7조(지도감독 및 결과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의연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규정은 199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97 재해 모금 계획서

1. 목 적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동포들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방과 사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고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왔으며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전통은 지금도 연면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리협의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생활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깊은 실의에 잠겨있는 이재민들에게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조속히 생활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져 언론기관을 통한 범국민적인 모금사업을 전개코져 합니다.

2. 모금 목표액 300억원

3. 모금실시기간 재해발생시

4. 모금내역

가. 기탁모금

나. 지 역: 전국

다. 방 법

(1)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각 신문사 및 방송사등에 기탁되는 국민의연금품과 해외동포로부터 기탁되는 의연금품

(2) 각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탁되는 의연금은 종합구호계획에 의한 중앙 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및 유선방송협회에서 집금하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전달토록 한다.

(단, 신문, 방송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언론사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송금토록 한다.)

(3) 중앙언론 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령하나 재해

지역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유한 의연물품을 재해지역 이재민가구수와 재해피해액에 의거 균등하게 배정토록하고 재해피해지역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시,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여 이재민에게 배정토록 한다. (단, 재해발생지역이 아닌 시,도 및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적십자사에 전달 또는 본협의회와 협의하여 전달토록 한다.)

- 라. 수재의연금품 기탁자가 특정인이나 전달처를 지정한 의연금품은 언론기관에서 접수하지 아니한다.
- 마. 당해 재해지역 행정기관에 접수된 수재의연금품은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되 사용후 보건복지부와 본협의회 사용내역을 보고 및 통보토록 한다.
- 바. 비재해지역 행정기관에 접수된 수재의연금품은 해당 시,도 언론기관에 기탁토록 한다.

사. 공무원 모금

보건복지부 및 총무처장관의 협조를 받아 재해가 발생하였을때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중사급이상, 국영기업체 및 금융기관근무 임직원으로부터 재해민구호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해의연금으로 헌금토록 하고 각부처별로 징금된 의연금은 언론기관에 전달토록 협조의뢰 한다.

아. 기업체 모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산하회원 기업체에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재해민구호를 위한 의연금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록 의뢰한다.

- 자. 각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재해의연금 모금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뢰한다.

5. 의연금 사용

- 가. 모금된 의연금은 재해구호비등 복구비용부담기준(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지원기준 별표 참조)
- 나. 모집된 의연품은 재해지구 재해대책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에 배정하여 이재민에게 배분토록 한다.
- 다. 의연금품 모집과 복구사업이 종료되었을때에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모집내역 및 사용실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동포애에 감사하는 뜻을 표시하도록 한다.

회 원 명 단

(가나다 순)

職 位	姓 名	所 屬 機 關	電 話
顧 問	柳 達 永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786 - 1754
”	黃 溫 順	徽慶學園 理事長	244 - 2304
名譽會長	柳 建 浩	(前)朝鮮日報社 主筆 및 代表理事	542 - 5503
會 長	崔 鐘 律	(前)京鄉新聞社 社長 및 韓國新聞協會長	3272 - 0123
副 會 長	高 成 光	大田文化放送 社長	(042)222-3000
”	朴 勇 正	韓國經濟新聞社 社長	360 - 4101
”	李 嫵 淑	韓國女性團體協議會 會長	794 - 4450
理 · 事	盧 永 台	韓國放送協會 常任理事 兼 事務處長	735 - 7117
”	李 柄 雄	大韓赤十字社 事務總長	755 - 9301
”	李 尙 根	韓國新聞放送編輯人協會 事務局長	732 - 1726
”	李 榮 德	韓國社會福祉協議會 會長	712 - 0305
”	李 雄	韓國新聞協會 事務局長	733 - 2251
”	張 在 九	한국일보社 會長	724 - 2114
”	崔 鍾 賢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780 - 0821
”	洪 斗 杓	韓國放送公社 社長	781 - 2311
”	洪 錫 炫	中央日報社 社長	751 - 9627
監 事	朴 龍 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事務總長	576 - 5892
”	張 大 煥	每日經濟新聞社 社長	2626 - 360
常任理事	金 健 宇	全國災害對策協議會 事務局長	3272 - 0123

職 位	姓 名	所 屬 機 關	電 話
會 員	姜 大 榛	全國劇場聯合會 會長	735 - 3382
"	具 平 會	韓國貿易協會 會長	551 - 0114
"	權 根 述	한거래신문사 社長	710 - 0114
"	金 甲 現	大韓YWCA聯合會 會長	774 - 9702
"	金 東 圭	大韓住宅公社 社長	513 - 3114
"	金 募 妊	大韓家族計劃協會 會長	634 - 8211
"	金 炳 琯	東亞日報社 會長	361 - 0114
"	金 相 廈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316 - 3502
"	南 時 旭	문화일보社 社長	3701 - 5114
"	朴 相 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785 - 0010
"	朴 鍾 植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240 - 3114
"	方 相 勳	朝鮮日報社 社長	724 - 5114
"	孫 柱 煥	서울신문社 社長	735 - 7711
"	宋 月 珠	大韓佛教曹溪宗總務院 院長	739 - 5590
"	元 喆 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397 - 5114
"	尹 赫 基	(株)서울放送 社長	780 - 0006
"	李 南 周	韓國YMCA全國聯盟 事務總長	754 - 7891
"	李 得 洌	(株)文化放送 社長	784 - 2000
"	李 相 回	世界日報社 社長	799 - 4114
"	李 允 鍾	林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416 - 9416
"	池 三 峰	서울특별시 醫師會 會長	676 - 9751
"	車 一 錫	國民日報社 社長	7054 - 114

재해의연금품 모집 및 사용절차

(대규모 재해시)

1. 보건복지부와 모금액 및 모집기간등 협의
2.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내무부장관에 의연금품 모집허가신청
3. 내무부장관의 모집허가를 받아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및 유선방송협회에 의연금품 모집협조의뢰
4.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및 유선방송협회는 회원사에 모집통보
5. 각 언론사에서 의연금모집후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및 유선방송협회에 전달
6.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및 유선방송협회는 의연금모집후 본회에 전달
7. 전국 언론사에 기탁한 의연품은 본회에서 집급하여 해당 재해지역에 전달
8. 의연금은 모집후 정부종합구호계획에 의거, 재해대책본부 조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해당 시,도에 전달

의연금품 모집과 집행내역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TEL (02)3272-0123(代)

FAX (02)3272-0122